〈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유가네찜닭

등 록 번 호 : 20250179
최초 등록일 : 2025.02.14
최종 등록일 : 2025.02.27

www.yoogane.co.kr

유가네찜닭 정보공개서

㈜바이올푸드글로벌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 년 월 일

㈜바이올푸드글로벌

주의 사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제12층 제비1204~1207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 전화번호 : 02-3288-9922 ○ 팩스번호 : 02-3288-8818
○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사업본부 02-3288-9922

목 차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Ⅹ. 기타 첨부서류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 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년, 월, 일)

상 호	영업 표지	주 소			
㈜바이올푸드 글로벌	유가네찜닭 外1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제12층 제비1204호~1207호 (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4.11.26	2014.11.26	권 지 훈	02-3288-9922	02-3288-8818
	법인등록번호	110111-5574135	**사업자등록번호**	119-87-0318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 계	이 름	영업 표지	주 소		
대표이사	권 지 훈 ㈜바이올푸드 글로벌	유가네찜닭 外1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제12층 제비1204~1207호 (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권 지 훈	02-3288-9922	02-3288-8818
관 계	**이 름**	**영업 표지**	**주 소**		
이 사	권 형 근 ㈜바이올푸드 글로벌	유가네찜닭 外1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제12층 제비1204~1207호 (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권 지 훈	02-3288-9922	02-3288-8818
관 계	**이 름**	**영업 표지**	**주 소**		
이 사	권 순 용 ㈜바이올푸드 글로벌	유가네찜닭 外1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제12층 제비1204~1207호 (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권 지 훈	02-3288-9922	02-3288-8818
관 계	**이 름**	**영업 표지**	**주 소**		
감사	정 재 영 ㈜바이올푸드 글로벌	유가네찜닭 外1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제12층 제비1204~1207호 (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권 지 훈	02-3288-9922	02-3288-8818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 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유가네찜닭"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유가네찜닭	유가네 찜닭은 대중적 메뉴인 찜닭을 유가네만의 특제 소스로 조리하여, 차별화된 찜닭 맛을 구현하였습니다.특히, 기본 메뉴인 '간장찜닭' 외 '빨간찜닭', '로제찜닭' 등 다양한 메뉴 개발 및 치즈, 누룽지 등 다양한 토핑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메뉴로 구성되었습니다.
상 호	유가네찜닭 ○○점	가맹점명은 당사와 귀하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상표·서비스표	유가네찜닭	p4 참조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재무상황 요약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근거자료로 **재무제표**가 **별첨 1**에 **첨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 도	자 산	부 채	자 본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비 고
2022년	4,267,107	3,236,829	1,030,278	28,067,342	160,068	374,502	별첨 1.에
2023년	3,999,270	2,557,385	1,441,885	29,048,669	433,238	448,606	재무제표
2024년				769,042			첨부

※2024년도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기재된 매출임

2)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당사의 매출액에서 온라인 판매액을 제외한 금액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유가네짬닭은 가맹사업전이라 매출이 없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최근 3년간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년. 월. 일)

관련 여부	이 름	현 직위	사업 경력		
			기 간	직 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권 지 훈	대표이사	2020.01.01. ~ 현재	대표이사	업무총괄
	권 형 근	이 사	2020.01.01. ~ 현재	이 사	경영업무
	권 순 용	이 사	2020.01.01. ~ 현재	이 사	경영업무
	정 재 영	감 사	2020.01.01. ~ 현재	감 사	감사업무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단위 : 명)

시 점	임원 수		직원 수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3	4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습니다.

(단위 : 년. 월. 일)

관 계	상 호	구 분	기 간	사업내용
당 사	㈜바이올푸드 글로벌	가맹사업 경영	2020.01.01. ~ 2023.03.16.	“피자와치킨”이라는 영업표지의 피자/치킨 (정보공개서등록번호 20190716 /2023.03.17. 자진 취소)
당 사	㈜바이올푸드 글로벌	가맹사업 경영	2014.11.26. ~ 현재	“유가네”라는 영업표지의 닭갈비 전문점 운영중(정보공개서등록번호: 20130452)
당 사	㈜바이올푸드 글로벌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예정	정보공개서 등록 예정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는 ㈜바이올푸드와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용하므로 귀하는 당사와 계약된 범위 내에서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귀하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명 칭	권리내용	출원일자	출원번호	출원인	등록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35.43류	2024.12.11	4020240227783	㈜바이올푸드	출원 중

위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유가네찜닭”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가맹사업 개시 전

2. “유가네찜닭” 연혁

(단위 : 년. 월. 일)

가맹본부 상호	영업 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바이올푸드 글로벌	유가네찜닭	권 지 훈	가맹상업 예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제12층 제비1204~1207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3. “유가네찜닭”의 업종

영업 표지	업 종	
	대분류	소분류
유가네찜닭	한식	간장찜닭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유가네찜닭”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수

(단위: 년, 월, 일/개)

지 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 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 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 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 체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비 고									

※“유가네찜닭”브랜드로 가맹사업 개시 전 입니다.

5. 바로 전 3년간 “유가네찜닭” 가맹점 수

(단위: 개)

연 도	연 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 말
2022년						
2023년						
2024년						

※“유가네찜닭”브랜드로 가맹사업 개시 전 입니다.

6. “유가네찜닭”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단위: 년, 월, 일/개)

관 계	상 호	영업 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 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당사	㈜바이올푸드 글로벌	유가네	20130452	한식	202/1	200/1	

※ 정기 변경 신고 시 2024년 말 직.가맹점수 반영 예정임.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유가네찜닭”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개/천원, 천원, VAT 미포함)

지 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 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 (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3.3㎡ 당	상한	면적3.3㎡ 당	하한	면적3.3㎡ 당	
전 체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유가네찜닭”브랜드로 가맹사업 개시 전 입니다.

위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상의 매출액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영업개월 수가 6개월 미만인 4개 가맹점과 양수도로 양도자의 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가맹점은 양수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4개 양수가맹점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영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가맹점은 12개월로 환산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므로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 및 가맹점사업자별로 시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투자규모,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유가네찜닭" 가맹점의 평균 영업 기간

"유가네찜닭"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일)

연 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년		

"유가네찜닭"은 가맹사업 개시 전이라 가맹점이 없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유가네찜닭"**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천원 이하 반올림, 부가세 미포함)

구 분	수 단	기 간	지출비용		
			합 계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광 고					
판촉					
합 계					

"유가네찜닭"브랜드로 가맹사업 개시 전이라 소요 비용이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

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 소	전화 번호
국민은행	남양산 지점	경남 양산시 삽량로 199 서린프라자 2층	055-384-2871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하나은행] 중 1곳**에 [**계약체결일**]에 **예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바이올푸드글로벌]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예치한 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당사에 지급**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① 귀하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② 귀하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③ 귀하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위 ① ~ ③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당사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가맹사업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독점규제법』이라 한다) 및『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가맹사업법』또는『독점규제법』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유가네찜닭”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비 고
가맹비	3,300	계약체결일	○ 구성 – 영업지역권 및 가맹점운영권 부여 1,100 – 개업지원 대가 1,100 – 운영매뉴얼 등 각종 자료제공 대가 1,100 ○ 개업지원 대가 및 운영매뉴얼 등 각종 자료 제공 대가는 지원·제공함으로서 즉시 소멸 ○ 개업지원의 대가 : 가맹본부 SV 2인이 오픈 전·후 7일 동안 현장 운영교육 진행
신규 교육비	2,200		○ 교육비는 가맹점사업자 및 매니저 교육기준, 직원 1명당 550 추가됨. ○ 교육이수 후 즉시 소멸
총 계	5,500		
반환 조건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귀하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다만, 귀하는 당사에 가맹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가맹사업법』 상 가맹금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영업지역권부여, 가맹점운영권 부여, 교육수료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의 경우		

2) 계약이행보증금

(단위 : 천원, VAT 제외)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계약이행 보증금	2,000	개원일까지 가맹사업보증보험증권 제출	정기지급금 미지급, 상품대금 미지급 등
비 고	-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 - 서울보증보험의 가맹사업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법』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 분	금 액	비 고
가맹비	3,300	
신규 교육비	2,200	
총 계	5,500	

4)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총 금액 88,050천원(VAT 포함)(추가비용 및 설계도면비 제외)으로써 **당사에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82.6/25평) 기준/단위: 천원, VAT 포함]

구 분	지급 대상	금 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인테리어비용	귀하가 선정한 자, 협력업체, 협력업체, 협력업체	52,250	2,090	별도로 체결된 공사(공급)계약서에 따름.	
간판(외부) 등 비용	귀하가 선정한 자, 협력업체	6,900	276		
주방기기·집기비품비용	귀하가 선정한 자, 협력업체, 협력업체	24,210	968		
가구비용	귀하가 선정한 자 또는 협력업체	4,690	187		
비 고	○ 기준금액은 인건비, 원자재 수급, 물가변동, 매장의 크기, 설치비 등의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매장에 따라 철거공사, 전기증설공사, 가스공사, 냉난방기, 외부공사비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정한 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움. ○ 지역특성에 따른 간판소재의 허가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로 협의 ○ 디자인비용은 330만원(VAT포함, 인테리어 완공 후 3일 이내에 지급)이며, 귀하가 인테리어 등의 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당사가 디자인 제공 시 즉시 소멸함.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귀하는 귀하의 책임으로 점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는 귀하가 점포를 선정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치장소, 통행인의 수, 지역의 특징,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 등을 조언할 수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귀 하	당사와 상담 후 귀하가 직접 원하는 점포를 파악 → 당사에 통지와 협의 → 최적의 입지 도출 → 당사의 승인을 구함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을 받기위한 기준	계약・채용 기준
귀 하	특별한 기준 없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및 피임의후견인이 아닐 것 만 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특별한 기준 없음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유가네찜닭”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가맹계약체결 후** 귀하에게 **별지로 제공**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분납제도

당사는 분납제도를 이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 분	지급 대상	금 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로열티	당사	220.0	매월 15일	반환 안 됨	반환 안 됨	
POS 사용료	협력업체	매월 5.5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름			
각종 교육훈련비	당사	p9 참조	교육 실시 3일 전 지급/QSC 교육의 경우 협의	교육비 납부 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실시 후 반환 안 됨	
광고비	당사	p9 ~11참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광고비 납부 후 1년간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광고 집행 시 반환 안 됨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귀하가 선정한 자, 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 등	p4~5참조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다름			
점포환경 개선비용		p11~12참조				
상품비용	당사	발주한 상품에 따라 금액 지급	선 지급 후 발주	상품의 하자발생 시	정해진 기한 내에 하자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연이자	당사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귀하가 당사에 부담하는 지급 채무를 지체한 경우

2) 구입 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각 가맹점이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 가맹금”이라 한다)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단위 : 천원, 천원 이하 반올림/%/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 기	위반 시 책임
고객서비스 점검	고객 서비스상태 점검	2개월에 1회 이상	**상품공급중단 /계약 해지 등**
위생관리	위생상태 점검		
표준레시피 준수	표준레시피를 준수여부 점검		
품질기준 준수, 상품관리	품질기준 준수여부 점검, 상품		

	관리상태 점검		
매출관리	매출 누락 등 매출관리 점검		
각종 인테리어・간판・ 주방기기 및 집기비품의 관리 등	인테리어・간판・주방기기 및 집기 비품의 관리상태 점검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 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유가네찜닭”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를 포함한 모든 “유가네찜닭” 가맹점사업자에게 ① 가맹사업 양도에 대한 통지 및 그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경우 ② 귀하를 포함한 모든 “유가네찜닭” 가맹점사업자는 정해진 기간까지 양도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에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양도를 승인한 가맹점사업자는 양수인과 새로운“유가네찜닭”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당사의 “유가네찜닭” 가맹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④ 양도를 거절한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가맹계약 해지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가네찜닭”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적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당사의 지적 재산권의 권리를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 ① 당사는 귀하를 포함한 모든 “유가네찜닭” 가맹점사업자에게 새로운 영업 표지를 마련하여 통지합니다. 이 경우 ② 귀하를 포함한 모든 “유가네찜닭” 가맹점사업자는 정해지 기간 내까지 영업 표지가 부착된 간판 등을 교체(p32~33참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가네찜닭”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 “유가네찜닭”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대표자의 사망, 소재불명 등의 사유 제외)으로 당사가 “유가네찜닭”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① 당사는 귀하를 포함한 모든 “유가네찜닭”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중단사실 통지하고 ② 당사와 귀하를 포함한 모든 “유가네찜닭” 가맹점사업자 간에 협의 후 가맹계약 해지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가네찜닭”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가맹점의 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가네찜닭”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양도인 부담부분

귀하가 운영하는 **“유가네찜닭”**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 과정에서 귀하가 **당사에 부담하여 할 비용은 없습니다.**

나) 양수인 부담부분

귀하가 당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다음과 같이 귀하의 가맹계약 잔여기간을 승계하거나 당사와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의 선택에 따라 당사에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 또는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 분	가맹계약 잔여기간 승계	비 고
가맹비	-	
교육비	2,200	교육 이수
총 계	2,200	

구 분	신규 가맹계약 체결	비 고
가맹비	3,300	
교육비	2,200	교육 이수
총 계	5,500	
이행보증금	2,000	VAT 제외/가맹사업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귀하는 영업 및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가맹점 운영시스템, 조리법 등을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당사의 영업표지 등도 제거·철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당사의 영업표지와 관련한 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 등 on-line·SNS(이하 on-line·SNS라 합니다)에 사용하는 도메인 이름 등 각종 이름, on-line·SNS을 통하여 광고·홍보한 내용 및 영업지역 내에서 게재 중인 지역광고 등도 자진 삭제·철거·회수하고 전화번호도 삭제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가네찜닭”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만일 귀하가 위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귀하는 이점을 유념하십시오.**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유가네**찜닭"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가맹계약체결 후** 귀하에게 **별지로 제공**합니다.

1) 물품구입 및 임차 현황

가) 물품 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당사로부터 공급 받기로 한 경우**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사업자로부터 물품의 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초도물품은 개점의 준비 물품으로 본사가 일괄 구매하여 공급하는 상품이며, 개점 이후 권유 품목은 가맹본부 또는 개별 구매가 가능합니다.
- 주방 장비는 유가네찜닭 전용 장비로서 주문 제작 물품으로 가맹본부에 주문하여야 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유가네찜닭"** 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상품・원재료・부재료 등의 구입과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직전 연도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유가네찜닭"**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천원 이하 반올림. VAT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가네찜닭" 판매상품 정보 및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 2024년)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가맹본부' 공급 상품 일체	① 판매하도록 **지정된 상품**을 **판매**하여야 함. ② 지정된 상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③ **표준레시피 및 조리방법**을 **준수**하여 야 함. **등**	**상품공급 중단/ 가맹계약 해지**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귀하는 당사의 영업 표지를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공

급받은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이외에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유가네찜닭"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귀하가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당사는 귀하를 상대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귀하는 이점 유의하십시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가네찜닭" 판매 상품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VAT 포함)

상품명	권장 가격	가격통보 방법	비고
1인 간장찜닭 정식	15,000	사전 서면 통지 등	2024년12월 기준
1인 빨간찜닭 정식	15,000		
간장찜닭	25,000		
빨간찜닭	25,000		
치즈간장찜닭	27,000		
치즈빨간찜닭	27,000		
로제찜닭	27,000		
계란밥 도시락	4,000		
김가루 주먹밥	3,000		
계란찜	4,000		
떡볶이	6,000		
어묵탕	8,000		
누룽지	2,000		
둥근당면	2,000		
넙적당면	2,000		
우동면사리	2,000		
치즈떡	2,000		
고구마떡	2,000		
후루룩떡	2,000		
메추리알	2,000		
고구마	2,000		
모짜렐라치즈	3,000		

위 표에 기재된 권장 가격은 귀하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사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판매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권장 가격은 귀하가 당사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시점의 가격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십시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귀하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당 사	계열회사
찜닭을 주 메뉴로 판매 하는 찜닭 전문 매장	**유가네찜닭**	-

귀하의 영업지역의 보호는 당사의 여러 사업 중 찜닭 **메뉴를 주 사업으로 하는 "유가네찜닭" 영업표지에만 한정**하고, 찜닭 메뉴를 주 사업개념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사의 다른 영업표지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영업 표지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은 귀하의 영업지역에 입점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원칙적으로 가맹점을 중심으로 반경 500M. 다만, 지역에 따라	가맹계약서 내에 영업지역 표시 및 별지에

설정기준이 다를 수 있음.	**지도로 표시**
특히 영업지역 내 특수상권[푸드코트, 백화점, 공항, 대학가, 쇼핑몰, 역사(기차, 지하철), 지하 아케이드, 대형 건물사옥, 병원 등]이 형성되어 있거나 형성이 예정된 경우 특수상권은 별도의 상권으로 보며 영업지역권을 부여하지 아니함.	
배달서비스의 경우 영업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함.	.

3)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 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영업지역 조정절차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을 조정하기 위해 ① 귀하에게 영업지역 조정안 통지서를 보내면 ② 귀하는 당사와 합의를 통해 영업 지역을 변경을 변경합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에 영업지역 밖의 고객이 방문한 경우 그 고객에게 귀하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귀하는 **On-line 등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5) 가맹점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지역 내의 대리점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귀하가 취급하는 상품을 온라인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귀하는 가맹점 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된 점포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년				

※ “유가네찜닭”브랜드로 가맹사업 개시전입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 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오프라인 전용 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 상품 비중
2024년		

※ “유가네찜닭”브랜드로 가맹사업 개시전입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기간

“유가네찜닭” 가맹사업의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당사는 귀하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귀하에게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간 만료 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귀하가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귀하와의 계약갱신을 거절 또는 종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가네찜닭”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갱신 거절사유

계약갱신 거절사유(가맹계약서 제6조 ②항)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써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써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써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타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 제외

나) 계약 종료 사유

계약 종료 사유(가맹계약서 제6조 ⑤항)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3.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 집행 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5.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가네닭갈비”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의 일반해지

(1) 당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 사업자” 의 계약의 일반해지 사유(가맹계약서 제36조)
1. 가맹점사업자가 제5조 제②항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제5조 제④항 규정을 위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제5조 제⑤항 단서규정을 위반하여 사전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제7조 제②항 규정을 위반하여 통일성·동일성을 해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제7조 제③항 규정을 위반하여 현재 사용 중이거나 장래 채택·획득할 수 있는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제7조 제④항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가맹본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제7조 제⑥항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 전의 영업 표지가 부착된 상품 등을 처분·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제7조 제⑨항 규정을 위반하여 정하는 사양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제8조 제②항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지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제8조 제⑥항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된 영업지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가맹점사업자가 제8조 제⑦항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12. 가맹점사업자가 제9조 제③항 규정을 위반하여 3회 이상 정기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가맹점사업자의 제10조 제①항 규정을 위반하여 50일이 지나도 개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14. 가맹점사업자 및 그 직원이 제11조 제②항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관리자 및 관리자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15. 가맹점사업자가 제12조 제①항 또는 제⑤항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판촉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16. 가맹점사업자가 제12조 제②항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판촉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17. 가맹점사업자가 제12조 제⑧항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지역 외에서 광고·판촉활동을 하는 경우
18. 맹점사업자가 제12조 제⑧항 내지 제⑨항, 제⑪항 또는 제⑬항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는 경우
19. 가맹점사업자가 제12조 제⑩항 규정을 위반하여 합의되지 아니한 가격을 표시하는 경우
20. 가맹점사업자가 제12조 제⑭항 규정을 위반하여 이미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21. 가맹점사업자가 제13조 제⑥항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하는 사양의 POS 및 운영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22. 가맹점사업자가 제13조 제⑦항 규정을 위반하여 CCTV·보안시스템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동영상을 공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23. 가맹점사업자가 제14조 제②항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 승인 없이 최초 설계·시공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합의하여 설계·시공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4. 가맹점사업자가 제14조 제③항 규정을 위반하여 점포환경개선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5. 가맹점사업자가 제14조 제⑧항 규정을 위반하여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6. 가맹점사업자가 제14조 제⑨항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 승인 없이 조작하거나 임의로 추가하는 경우
27. 가맹점사업자가 제15조 제①항 규정을 위반하여 제3자로부터 상품을 구입·공급받는 경우
28. 가맹점사업자가 제15조 제③항 규정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9. 가맹점사업자가 제15조 제⑦항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는 경우
30. 가맹점사업자가 제16조 제①항 규정을 위반하여 감독·검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31. 가맹점사업자가 제16조 제②항 규정을 위반하여 보관기준을 준수 또는 최적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2. 가맹점사업자가 제16조제③항 규정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경과 또는 변질된 상품을 보관하는 경우
33. 가맹점사업자가 제16조제④항 규정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을 변조, 위조 또는 삭제행위를 하는 경우
34. 가맹점사업자가 제17조 제③항 규정을 위반하여 하자가 발생한 상품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35. 가맹점사업자가 제19조 제①항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한 상품을 판매·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36. 가맹점사업자가 제19조 제⑤항 규정을 위반하여 표준레시피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7. 가맹점사업자가 제19조 제⑥항 규정을 위반하여 상품에 이물질, 혐오물질 투입·혼입행위 또는 부주의에 의한 유해물질 투입·혼입행위를 하는 경우
38. 가맹점사업자가 제19조 제⑦항 규정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품을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39. 가맹점사업자가 제19조 제⑧항 규정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품을 진열 또는 판매하는 경우
40. 가맹점사업자가 제19조 제⑨항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41. 가맹점사업자가 제19조 제⑩항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된 점포에서 판매하는 경우
42. 가맹점사업자가 제19조 제⑪항 규정을 위반하여 “유가네찜닭” 타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경쟁관계 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43. 가맹점사업자가 제19조 제⑫항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44. 가맹점사업자가 제19조 제15항 규정을 위반하여 배달거래와 관련된 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45. 가맹점사업자가 제21조 제①항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
46. 가맹점사업자가 제21조 제②항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세미나자료·영업 관련자료 등을 인쇄·복사인터넷 등 공표 또는 제3자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47. 가맹점사업자가 제22조 제①항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가맹본부와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의 일반해지 사유(가맹계약서 제36조)
48. 가맹점사업자가 제23조 제①항 내지 제②항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된)운영매뉴얼 및 세부 운영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49. 가맹점사업자가 제23조 제④항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매뉴얼 및 세부 운영규칙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비밀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가맹점사업자가 제24조 제①항 규정을 위반하여 POS에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회계장부(상업장부)등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51. 가맹점사업자가 제24조 제②항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52. 가맹점사업자가 제24조 제③항 내지 제④항 규정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53. 가맹점사업자가 제24조 제⑤항 내지 제⑥항 규정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54. 가맹점사업자가 제25조 제④항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 출입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의 확인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55. 가맹점사업자가 제25조 제⑥항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56. 가맹점사업자가 제25조 제⑦항 규정을 위반하여 미생물 검출기준이 법적기준치 이상일 경우
57. 가맹점사업자가 제27조 제①항 규정을 위반하여 제휴할인 정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58. 가맹점사업자가 제28조 제②항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근로기준법 등과 관련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9. 가맹점사업자가 제28조 제③항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는 경우
60. 가맹점사업자가 제29조 제②항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61. 가맹점사업자가 제29조 제③항 규정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62. 가맹점사업자가 제29조 제④항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63. 가맹점사업자가 제32조 제①항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4. 가맹점사업자가 제33조 제②항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음원을 사용하는 경우
65.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제34조(상품 등의 공급중단)제①항 규정에 해당(동일 사안이 아니더라도 당됨)하는 경우
66. 가맹점사업자가 제41조 제②항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67. 가맹점사업자가 제43조 제①항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68. 가맹점사업자가 제43조 제⑤항 내지 제⑥항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69. 가맹점사업자가 제43조 제⑨항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을 대리경영 또는 가맹점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70. 가맹점사업자가 on-line 또는 off-line 상으로 가맹본부의 명예 또는 “유가네쩜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다만, 제43조 단서 규정의 위법행위 등이 아닌 방법으로 “유가네쩜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71. 가맹점사업자가 “유가네쩜닭” 타 가맹점을 선동하여 가맹본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72. 가맹점사업자가 1년 이내 동일한 사유로 3회 이상 또는 다른 사유로 5회 이상 고객 컴플레인을 받는 경우
73.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가맹사업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계약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 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사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계약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귀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의 계약의 일반해지 사유
1. 가맹본부가 제7조 제⑥항 규정을 위반하여 새로운 영업표지를 정하여 서면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7조 제⑦항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8조 제④항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한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개설하는 경우
4. 가맹본부가 제12조 제③항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비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가맹본부가 제12조 제⑤항 규정을 위반하여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가맹본부가 제14조 제③항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가맹본부가 제17조 제④항 규정을 위반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8. 가맹본부가 제18조 제②항 규정을 위반하여 반품 또는 교환처리를 해 주지 않는 경우
9. 가맹본부가 제23조 제②항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된 운영매뉴얼 및 세부 운영규칙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가맹본부가 제25조 제①항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을 점검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가맹본부가 제26조 제②항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가맹본부가 제27조 제②항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가맹본부가 제42조 제①항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4. 기타 가맹본부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하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당사에 **계약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일 귀하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계약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나) 계약의 즉시 해지

당사 또는 귀하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의 즉시해지 사유
① 귀하가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⑤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⑥ 귀하가『가맹사업법』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제1항 본문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로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⑦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⑧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⑨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2) 귀하가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의 계약의 즉시해지 사유
① 당사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② 당사가 파산 신청한 경우 ③ 당사가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④ 당사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⑤ 당사가 대표자의 사망•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⑥ 천재지변 등으로 당사가 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계약기간 중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당사와 귀하의 합의로 계약은 수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을 양도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하가 당사의 승인을 얻어 가맹점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가네찜닭”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 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고 당사의 승인이 존재	귀하가 당사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자가 예비 양수인 면담(15일 가량 소요) → 당사가 귀하에게 양도 승인여부 통지 → 당사와 양수인 간의 가맹계약 체결,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귀하의 제반절차 협력)	**교육 이수**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 당사는 귀하의 법적 상속인인 경우 가맹점운영권의 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 가능 조건	상속 절차	비 고
법적 상속인인 경우 가능	상속인이 당사에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자가 상속인 면담(15일 가량 소요) → 당사가 상속인에게 승인여부 통지 → 당사와 상속인 간의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점 운영권 상속 완료	**교육 이수**

자세한 사항은 “유가네찜닭”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임대 또는 대리경영(예. 귀하가 경영을 타인에게 위탁)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계약기간 중**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유가네찜닭”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귀하가 계약기간 중에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와의 **“유가네찜닭”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당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하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가네찜닭”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 일수 제한

당사는 귀하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가네찜닭”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업 시간	영업 일수	비 고
11:00~23:00	매월 26일(2월은 24일) 이상을 원칙	문의 : 가맹사업부(02-330-4298)

『가맹사업법』 제15조제10호 규정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귀하는 가맹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인 이상**을 **직원을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의 사정에 따라 당사와 합의하여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가네찜닭”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독 항목	시 기	위반 시 책임
고객서비스 상태, 위생관리, 표준레시피의 준수, 품질기준 준수, 상품관리, 매출관리, 각종 인테리어・간판・주방기기 및 집기비품의 관리, 공문서 또는 홈페이지상 공지되는 경영방침의 준수 등	2개월에 1회 이상 가맹점	**상품공급 중단/계약해지 등**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유가네쩜닭”** 영업표지의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또는 판촉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가네쩜닭”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성격	부담 비율	
			당사 부담	가맹점 부담
전국•지역 단위	광 고	브랜드•상품 광고	전체 광고비의 1/3 부담①	(해당)가맹점사업자들이 나머지 2/3 안분
		브랜드•상품 및 가맹점 모집 광고	①+전체 광고비의 10% 부담	
		가맹점 모집 광고	전액 부담	-
	판 촉	판촉활동	전체 광고비의 1/3 부담	해당)가맹점사업자들이 나머지 2/3 안분
분담 절차		사전 약정 체결 또는 사전 동의(광고 50%, 판촉 70% 이상) 절차 진행		
비 고		지역단위 광고•판촉활동의 경우 기간 또는 비용부담을 다르게 진행할 수 있음.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필요시 자신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 또는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방법•시기•횟수 등에 관하여 당사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가네쩜닭”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의 가격부문, 신상품 관련부분, 상품공급거래처, 가맹점운영 노하우 등으로 당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귀하를 포함 한 “유가네쩜닭” 가맹점사업자들에게만 제공하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기간 중 알게 된 당사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 중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가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유가네쩜닭” 가맹계약 해지, 손해배상 또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유가네쩜닭”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임원 포함)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가네쩜닭”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조항 내용	손해배상 금액
제8조(영업지역) 제⑩항	일당사자는 타방당사자에게 다음 각호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최근 1년간(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기간 중) 월 평균 순매출액(POS 순매출, 부가세 제외, 이하 동일하다)의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19조 (상품의판매) 제⑫항	
제21조 (비밀유지의무) 제3항	
제22조 (경업금지 의무) 제②항	
제23조(매뉴얼 준수) 제⑤항	
제37조(계약의 즉시해지)제③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최근 1년간(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기간 중) 월 평균 순매출액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
제44조(위법행위 등)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계약의 일반해지) 제⑤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계약의 일반해지) 제⑥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8조(계약의 합의해지)제1호 내지 제2호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종료 이후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계약 종료일의 익일부터 1일당 ₩50,000 씩 계산하여 위약금으로 지급.
제40조(손해배상) 제①항 내지 제②항	『유가네찜닭』 타가맹점 5개를 기준(5개가 아니 되는 경우 개점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하고 1개의 가맹점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국 월 평균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월 평균 순매출액을 산정.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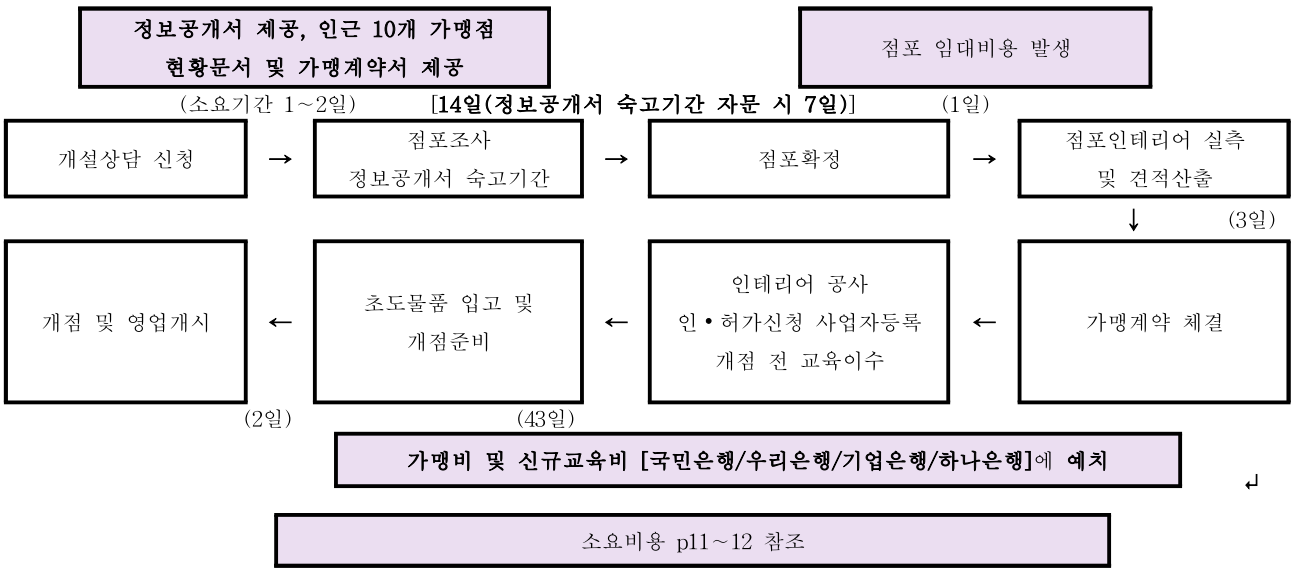

위 도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특히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단축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다만, 가맹계약서**의 경우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귀하는 이점을 유의하십시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1) 당사와 귀하간의 분쟁의 경우

당사와 귀하가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 할 경우, **당사와 귀하의 본 계약에 관한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는『가맹사업법』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 http://www.kofair.or. 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와 "유가네찜닭" 가맹점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귀하와 **"유가네찜닭"** 가맹점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당사자는 당사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 환경 개선 등 비용지원 내역

1) 점포 환경 개선의 경우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귀하의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그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가네찜닭"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th><th>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th></tr>
<tr><td rowspan="3">당사
부담</td><td>비용 항목</td><td colspan="3">간판교체비용/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용되는 일체의 비용. 다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귀하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td></tr>
<tr><td rowspan="2">비용 비율</td><td colspan="2">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td><td>총비용의 20%</td></tr>
<tr><td colspan="2">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td><td>총 비용의 40%</td></tr>
<tr><td colspan="2" rowspan="2">지급 절차</td><td>귀하가 점포환경을 개선한 경우</td><td>귀하의 비용청구→지급 청구일부터 90일 이내 당사의 부담액 지급.</td><td rowspan="2">다만, 1년의 범위 내에서 합의에 의해 분할 지급 가능</td></tr>
<tr><td>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을 개선한 경우</td><td>당사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 지급</td></tr>
<tr><td colspan="2">비용부담 제외사유</td><td colspan="3">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및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당사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td></tr>
<tr><td colspan="2">비 고</td><td colspan="3">-</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th><th>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th></tr>
<tr><td rowspan="3">당사
부담</td><td>비용 항목</td><td colspan="2">공사계약 체결내용에 따라 다름</td></tr>
<tr><td rowspan="2">비용 비율</td><td colspan="2">귀하가 전체 비용 부담</td></tr>
<tr><td colspan="2">공사계약 체결내용에 따라 다름</td></tr>
<tr><td colspan="2">비용부담 제외사유</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비 고</td><td colspan="2">-</td></tr>
</table>

2) 영업표지 변경의 경우

당사가 **영업표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가네찜닭"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3">영업표지의 변경</th></tr>
<tr><td rowspan="2">당사
부담</td><td>비용 항목</td><td colspan="3">간판, 로고 등 영업표지 교체 비용</td></tr>
<tr><td>비용 비율</td><td colspan="3">총 비용의 20%</td></tr>
<tr><td colspan="2" rowspan="2">지급 절차</td><td>귀하가 영업표지를 변경한 경우</td><td>귀하의 비용청구→지급 청구일부터 90일 이내 당사의 부담액 지급.</td><td rowspan="2">다만, 1년의 범위 내에서 합의에 의해 분할 지급 가능</td></tr>
<tr><td>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영업표지를 변경한 경우</td><td>당사는 영업표지 변경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 지급</td></tr>
<tr><td colspan="2">비용부담 제외사유</td><td colspan="3">영업표지 변경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및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당사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td></tr>
<tr><td colspan="2">비 고</td><td colspan="3">-</td></tr>
</table>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당사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VAT 미포함)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가맹점 개점 시 판촉인원 파견 및 전단지, 기념품 등의 판촉비용 지원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에 따라 판촉인원 수 및 판촉비용 차등 지원	오픈일로부터 2일간	1,000 한도	가맹비 완납 매장에 한함 (할인 시 지원제외)

3. 경영활동

당사는 가맹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귀하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체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 부담	비 고
당사	상품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등 가맹점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당사 담당자가 가맹점 방문→경영진단→ 귀하에게 경영지도→귀하가 이행	귀하가 부담	경영지도가 필요한 가맹점의 경우 시행
귀하				귀하의 요청 시 시행

4. 신용제공 등 내역

당사는 **“유가네찜닭”**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신용제공 조건은 귀하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 제공자	금 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프랜차이즈 우대신용 대출	하나은행	최대 30,000	담보 대출	신한은행의 신용등급 확인 후 30,000 이상 담보 제공
비 고	**하나은행 평촌범계역지점(031-383-0384)으로 문의**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유가네찜닭”** 가맹점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내용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Ⅷ.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유가네찜닭"**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 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 고
신규교육	가맹점 운영 매뉴얼 및 메뉴 실습 등	기본 매뉴얼교육	주 40시간	-최초계약 시 이수 -필수교육 -귀하를 포함하여 2명 기준 -종합평가 70점 이상 수료
	기본 매뉴얼교육 실습 등	현장 실습교육	주 32시간	
재교육	변경된 가맹계약 내용 교육, 변화된 사업 환경 교육 및 적응 실습교육	기본 매뉴얼교육 및 현장 실습교육	추후 공지	-필수교육 -계약이 갱신(재계약)될 경우 실시하는 교육 -변경된 가맹계약 내용 및 변화된 사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 등
보수교육	매뉴얼 교육		주 5일	-필수교육 -귀하 또는 그 직원에게 정기·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가맹점의 매출증대·서비스 제고 또는 시정명령에 따른 소집교육 등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 교육, 신제품교육, 영업방침 변경사항 교육 등	추후 협의		-점주회의, 가맹점사업자간담회, 가맹점사업자역량강화등 명칭 여하 불문
QSC 운영 교육	교육 세부사항 협의	현장 실습교육	일 8시간	-가맹점사업자 요청에 의한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유가네찜닭"**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 분	최소시간	비 용	비 고
신규교육	주 72시간	2,200	-교육이수 후 즉시 소멸
재교육	추후 공지		
보수교육	주 5일	770	
특별교육	추후 협의		
QSC 운영 교육	일 8시간	165	

3. 교육·훈련의 주체

당사가 시행하는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은 당사자 및 그 직원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당사가 시행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가맹점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 및 그 직원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 귀하의 **계약갱신 요구 시** 당사는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귀하는 이점을 유의하십시오.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순 번	지 역	명 칭	소재지	비 고

※ “유가네찜닭”의 직영점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고
	-

※ “유가네찜닭”의 직영점이 없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단위 : 천원, VAT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유가네찜닭”의 직영점이 없습니다.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부**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부 : 1661-9922

○ 『가맹사업법』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또는 가맹거래과**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 044-200-4010

가맹거래과 : help@ftc.go.kr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 http://franchise.ftc.go.kr

별첨1.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2. ㈜바이올푸드글로벌 2024년 부가가치세표 표준증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바이올푸드글로벌 재무제표 2023년~2022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본부용**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주)바이올푸드글로벌	**영업표지**	유가네찜닭
제공확인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작성합니다.		
	작성해주세요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및 인근가맹점현황을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및 인근가맹점현황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주)바이올푸드글로벌 대표이사 _____(인)

가맹희망자: 성명 _____서명 또는 (인)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희망자용**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주)바이올푸드글로벌	**영업표지**	유가네찜닭
제공확인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작성합니다.		
	작성해주세요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및 인근가맹점현황을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및 인근가맹점현황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주)바이올푸드글로벌 대표이사 _____(인)

가맹희망자: 성명 _____서명 또는 (인)